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 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정원 26명(7급 5명, 8급 5명, 9급 16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6급 5명, 7급 12명, 8급 9명)하면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2명(9급 2명)을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9. ~ 3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 본문 중 “정원”을 “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1,096”을 “1,094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96”을 “1,09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068”을 “1,06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<u>정원</u> 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32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<u>정원</u> 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--.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96</u>	<u>1,094</u>	-2
일반직 계	<u>1,096</u>	<u>1,094</u>	-2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068</u>	<u>1,066</u>	-2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8